

#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07. 2. 21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(이하 '기구'라 한다) 정관 제35조 규정에 따른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광고계, 학계, 법조계, 소비자·시민단체 및 여성·청소년단체 등에 종사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경력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조(위원의 임기 등)**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심의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연구비, 심의비, 거마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①위원회는 인터넷광고심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인터넷광고심의세칙의 수립 및 이사회 상정에 관한 사항

2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

가. 회원 또는 광고주, 광고제작자 등으로부터 심의신청된 인터넷광고

- 나. 기구가 인지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인터넷광고
- 다. 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심의신청된 인터넷광고
- 라. 법령 등에 의하여 심의 위탁된 인터넷광고
- 마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인터넷광고

3. 인터넷광고에 관한 분쟁사항

- 4. 기타 인터넷광고심의와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인터넷광고 내용의 인터넷광고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위반여부를 신속·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사항을 직접 조사 또는 사무처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**제5조(심의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- 1.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심의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-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심의시스템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온라인심의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한 위원은 당해 임시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6조(심의절차 및 의결)** ①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상정한 의안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②의결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, 단체 등에 통보한다.
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심의의결 내용)** 인터넷광고심의규정 및 심의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- 1. 주의
- 2. 경고
- 3. 광고수정
- 4. 광고중지

**제8조(권고)** 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

고 인터넷광고심의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주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하여 일반 또는 개별 권고할 수 있다.

**제9조(심의의결 불이행 처리)** ①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소·고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, 심의의결과 동시에 고소·고발 또는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재심의청구)** ①심의의결에 이의가 있는 (이해관계자)자(이하 '청구인'이라 한다)는 당해 심의의결 내용이 공표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청구인의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

2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
3.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

②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사무처에 재심의안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재심의의결 등)**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안건을 의결한다.

②위원회는 재심의가 청구된 안건이 사법기관에 제소 중이거나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되어 심리 중일 때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심의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.

**제12조(청구의 취하)** ①청구인은 재심의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심의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

②재심의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재심의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**제13조(원심의의 효력)** 재심의청구가 재심의결되기 전까지는 원심의의결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14조(심리)**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를 통하여 청구인 및

관계자에게 보완서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.

**제15조(재심의의결의 구분)** ①위원회는 원심의의결이 타당하고 재심의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.

②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의의결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.

**제16조(재심의의결 기간)** 재심의의결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영업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재심의의결 통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재심의의결서에는 재심의의결 번호 및 심의의결 내용,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시행을 위한 세부사항)**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